

미국 라벨링 규정 준수 가이드 요약본

-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이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품의 영양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미국인의 변화하는 식습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, 미국 식품의약국 (FDA)는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적용되는 라벨링 법규를 개정하고, 2016년 5월 27일, 식품 라벨링 개정 법안의 확정안을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
- 개정안의 시행일은, 연 식품매출액이 \$1,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, 연 식품매출액이 \$1,0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임
- 개정안은 영양성분표의 양식의 변경,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영양성분의 종류, 1회 권장 섭취량,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등의 개정을 포괄하고 있음
- 식품의 포장재 라벨링은 Principal Display Panel (전면표기부분)과 Information Panel (정보표기면)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음.
 - 전면표기부분에는 반드시 Statement of Identity 와 Net Contents 가 표기되어야 함
 - Statement of Identity 는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제품군의 명칭을 의미하며 미국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분류를 해야 함
 - Net Contents 는 미터법의 단위와 미국의 도량 단위를 함께 표기해야 함
 - 정보표기면에는 반드시 영양성분표, 원재료, 알러젠, 제조사 및 배급사,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함
 - 정보표기면은 전면표기부분의 오른쪽 면에 위치하는 공간이며, 영양성분표, 원재료, 제조사는 동일한 면에 모두 인접하게 위치하여야 하며, 그 사이에 비필수기재사항이 삽입되어서는 안됨
 - 영양성분표는 FDA 의 개정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함
 - 식품인 경우에는 NUTRITION FACTS, 건강보조식품인 경우에는 SUPPLEMENT FACTS의 양식으로 표기하여야 함

- 원재료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가능한 상용화된 단어로 표기해야 하며, 함량 비중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하여야 함
- 제품이 FDA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, 제조사의 바로 윗부분에 기재하도록 함
- 제품 포장재에 영문 이외의 국문으로 표기된 사항이 있다면, 라벨링 법안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영문과 국문으로 병기하여야 함
-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제조사의 주소 이외에 미국내 연락가능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, 전면표기부분에 ‘dietary supplement’ 용어를 사용하여 Statement of Identity 를 표기해야 함
- 라벨링에 사용하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는 FDA 에서 사용이 허가된 영양성분과 용어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영양성분을 강조하는 문구를 표기해서는 안됨